

도심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속초시 5개년 중 · 장기 계획 수정방안

□ 속초시 주차장 계획 및 확보 현황

구 분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94 확보실적	과 부 족	비 고
계		1,845면	5,025면	8,735면	3,010면	
소 계		1,505면	2,497면	3,835면	1,338면	
노상 주차장		270면	546면	402면	144면	
노외 주차장	공 영	1,235면	1,690면	1,138면	559면	
	민 영		254면	245면	9면	
	관광지			2,050면	2,050면	
부설 주차장		340면	2,528면	4,900면	2,372면	

□ 변 경 사 유

'92 당초계획은 '96년의 자동차 예상등록대수를 9,400대로 추정하고 이에 20%에 해당하는 1,845면의 주차면적을 산정하였으나 매년 30% 이상의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94. 9. 5 '96년 목표년도의 예상등록대수 16,590대의 30%에 해당하는 5,025면으로 확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지구에 대한 주차장 확충추진

- 영랑동 주차장 : 5,450㎡ · 220대 (4,160㎡ 미 포장)
 - 대포동 주차장 : 2,290㎡ · 90대
 - 금호동 주차장 : 1,761㎡ · 80대
 - 관광지 주차장 : 6개소 · 71,047㎡ · 1,600대
- 로 총 9개소 · 80,548㎡ · 1,990대

○ 도시계획시설의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

- 동명동 주차장 : $3,000\text{m}^2$ · 88대
 - 공설운동장 주변 : $1,200\text{m}^2$ · 50대
 - 청학동 해경대뒤 : $2,029\text{m}^2$ · 60대
 - 시청앞 항만매립지 : $4,280\text{m}^2$ · 180대
 - 구 속중 부지 : $6,500\text{m}^2$ · 270대 외 2개소 $5,150\text{m}^2$ · 180대
 - 민영 주차장 및 관광지 주차장 : 5개소 · $14,341\text{m}^2$ · 615대
- 로 총 12개소 · $24,783\text{m}^2$ · 1,443대

○ 노상주차장 : 9개소 · $6,332\text{m}^2$ · 402대

□ 향후 추진 계획

○ 도시계획상 결정된 주차장 확충 및 포장

- '95년 : 영랑동 주차장 _____ $4,160\text{m}^2$, 180면, 74백만원
- '96년 : 동명동 해경대옆 _____ $16,204\text{m}^2$, 810면, 286백만원

※ 도시계획사업 선행시 추진가능

○ 적정 후보지 선정의 주력

대포곶집단지

- 기존 주차장 반대편 : 대포동 산 67 - 1 외 4필지 ($5,174\text{m}^2$)와
- 산뚜꺼비 앞 : 대포동 산 67 - 13 외 5필지 ($11,599\text{m}^2$)에 대한 주차장화 검토
(청초호유원지 매립공사와 병행한 토취장으로 활용후 정지 및 포장공사후
주차장으로 활용)
- 청초호 신수로 개설시 현수로를 매립후 전용주차장 용지로 지정하는 방안
(항만청과 속초시가 도시계획 수립시 현수로 매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협약이 있었으나 매립주체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므로 절대 부족한 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속초시가 매립면허를 득한 후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여야함.)

설치대수 산정기준에 대한 법규개정 내용

시	설	물	90년 이전	현	행
숙박시설	호텔·콘도		상업지역안에서 1,000㎡ 이상 시설물은 150㎡당		400㎡당
	기타 시설				150㎡당
의료시설	종합병원		" 200㎡당		120㎡당
	기타 시설				150㎡당
운동시설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 연습장				1타석당
	옥외수영장		" 200㎡당		정원 15명당
	기타 시설				상업지역 : 150㎡당 주거지역 : 200㎡당 기타지역 : 250㎡당
관람, 집회시설	운동경기				수용인원 150인당
	예식장		" 150㎡당		60㎡당
	기타 시설				100㎡당
운수시설	공항·버스 터미널				150㎡당
	기타 시설		" 200㎡당		상업지역 : 150㎡당 주거지역 : 200㎡당 기타지역 : 250㎡당
판매시설	백화점·쇼핑시설				80㎡당
	기타 시설				100㎡당
위락시설	유흥 음식점		" 150㎡당		80㎡당
	기타 시설				100㎡당
업무시설					100㎡당
종교·전시·창고 시설			" 200㎡당		150㎡당
공동주택					150㎡당
근린생활					200㎡당
단독주택			2,000㎡이상인 경우		3,000㎡이하 : 1대
			400㎡당		3,000㎡이상 : 2,000㎡당
기타 건축물					300㎡당

※ 1. 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서는 1,000㎡이상의 시설물은 200㎡당

2. '90년이전에서 1,000㎡ 및 2,000㎡이하의 시설물인 경우 주차장설치 의무 제외